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기덕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1531호

다. 제출일자 : 2024. 01. 26.

라. 회부일자 : 2024. 02. 07.

2. 제안사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과 관련한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
-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를 명시하여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유도하고자 함

- 그 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스마트 정보교육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
- 나.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 (안 제3조 제2항)
- 다.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제4조제1항)
- 라. 실태조사 보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 제3항)
- 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해 신설함 (안 제6조)
- 바.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시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별도 작성내역 없음

라.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14. ~ 2024. 2. 1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교통안전법 제23조에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례개정안과 같이 고령운전자와 면허반납 어르신을 위한 각종 대책시행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1) 교통운영과-2877(2024. 2. 22.)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을 지원하여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정의 신설 관련(안 제2조제2호·제3호)

-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령운전자²⁾의 정의 외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스마트 정보교육” 대한 정의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임
- 서울시는 관련 방침³⁾을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스마트 정보교육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정의는 없으나 경기도에서 같은 용어⁴⁾를 신설한 조례가 통과되어 고령

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2024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추진 계획’ 교통운영과-142(2024. 1. 3.)

-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 지원내용: 최초 1회 한해,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등 ※'19~'23년 총 79,736명 지원

운전자가 앱과 인터넷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경로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도 ‘2023년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운영’⁵⁾ 등⁶⁾을 통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는 만큼 조례를 시행하는 경우 스마트 정보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시장의 책무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강화하는 취지로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재정지원(안 제4조제1항제3호·제4호)

- 현행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⁷⁾에 따라 운

4)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로의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10.]

5) ‘2023년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운영’ 교통운영과-4862(2023. 4. 5.)

6) 서울시 교통안전 홈페이지(https://tgis.eseoul.go.kr/traffic_safety/student-o1.html)
- 어르신 대상 일반 교통안전 교육 영상 등

7)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30만원 이내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 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교통 관련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재정지원들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 개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책이나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지원인 만큼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실태조사(안 제5조제3항)

-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과 관련한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실태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공유하고 올바른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관련 교통안전 시설 정비,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교통안전법」 제3조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안전을 위해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9)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홍보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이 밖에 해당 예방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법인 및 단체 등이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을 위한 ‘2023년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운영’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교통안전 교육운영 용역¹⁰⁾으로 예산을 지원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할 것임

8)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9) 「교통안전법」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2023년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운영’ 교통운영과-4862(2023. 4. 5.)

- 대상: 서울시내 복지관 등 시설이용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 도모
- 교육 운영 방법: 교통안전 전문 기관에 교육운영 용역 시행('23.4~11.)

■ 교육(안 제7조제3항)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제1항¹¹⁾에 따라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시 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민간위탁 등의 절차 준수를 통해 합리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무분별한 위탁 사업 추진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바, 민간위탁 추진시에는 신중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임

11)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6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